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9월 9일, 한준호의원 등 11인

나. 회부일자: 2026년 9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2026년 9월 15일

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9.15)

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수정가결)

제439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(2026.9.15)

상정 · 제안설명 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 ·

소위심사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: 한준호의원)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
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
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

마련되는 것에 맞추어,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.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4조의7 및 제49조의3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이지민)

-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촬영물 및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 등 정보의 유통,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하여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·제한하거나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정보의 확산이 빠르고 시간·장소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의 특성상, 정보 삭제나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2차 피해와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, 관계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하여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.
- 그런데, 2026년 10월 2일부터 「검찰청법」이 폐지되고 「공소청법」

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기반이 마련되고, 이에 맞추어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었으나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포함한 개별 법령에는 새로운 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황임.

- 이에 개정안은 종전에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검찰청이 수행하던 역할을 「공소청법」에 따른 공소청과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된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44조의7제4항제1호는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(검찰총장)에 추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, 공소유지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, 요청 범위를 넓히는 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안 제44조의7제4항제1호는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 또는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의 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”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 음

5.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한준호)

동 개정안은 일부 자구를 보완 및 수정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수정가결

8.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심사 내용

체계·자구심사를 거쳤음.

- [붙임] 1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6. 9.

제 안 자 :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

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함(안 제44조의7제4항제1호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4조의7제4항제1호 중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”를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의 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4조의7(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~ ③ (생략)	제44조의7(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제44조의7(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[제1항제9호의 정보 중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·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7제4항제1호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의 장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49조의3제1항 중 “경찰청장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·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의7(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~ ③ (생략)	제44조의7(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[제1항제9호의 정보 중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·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)과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]이 있었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

을 것	<u>포함한다)의 장 또는 수사기</u> <u>관</u> ----- -----
2. · 3. (생 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⑤ · ⑥ (생 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제49조의3(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 등) ① <u>경찰청장</u> · 검 찰총장 ·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49조 의2제1항에 따른 속이는 행위 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	제49조의3(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 등) ① <u>중대범죄수사</u> <u>청장</u> · <u>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